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인재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331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3.

발 의 자:인재근・양경숙・소병훈

양정숙 · 최연숙 · 최혜영

서영석 · 송갑석 · 문진석

이장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요양기관의 경우 일반 직장 사업장과 달리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와함께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급여비 청구권한이 있으며, 요양기관의건강보험료 체납액은 급여비와 상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.

하지만 요양기관의 선순위 채권자가 급여비 채권을 압류하거나 요양기관이 급여비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보험료 체납액을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경우 체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비를 원래대로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로 인해 건강보험과 유사한 구조인 산재보험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·공무원·군인·국민연금, 「상법」 상 손해보험 규정 등은 상 계제도가 아닌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음.

이에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에도 공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(안 제47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에"를 "제3항 후단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"제6항까지의"를 "제7항까지의"로 한다.

④ 공단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.

제97조제4항 중 "제47조제6항에"를 "제47조제7항에"로 한다.

제106조 중 "제47조제4항"을 "제47조제5항"으로 한다.

제115조제4항제2호 중 "제47조제6항을"을 "제47조제7항을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요양급여비용 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

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7조(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	제47조(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
지급 등) ① ~ ③ (생 략)	지급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
	<u>ㅇ</u>)
<u><신 설></u>	④ 공단은 제3항 전단에 따라
	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
	급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
	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
	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
	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
	금을 체납한 때에는 요양급여
	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
	<u>할 수 있다.</u>
<u>④</u> 공단은 <u>제3항에</u> 따라 가입	<u>⑤</u> <u>제3항 후단에</u>
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	
을 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	
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	
징수금(이하 "보험료등"이라 한	
다)과 상계(相計)할 수 있다.	<u>.</u>
<u>⑤</u> ・ <u>⑥</u> (생 략)	<u>⑥</u> ・ <u>⑦</u> (현행 제5항 및 제6항
	과 같음)
<u>⑦</u> 제1항부터 <u>제6항까지의</u> 규	<u>⑧</u> 제7항까지의
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	
구・심사・지급 등의 방법과	

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.

- 제97조(보고와 검사) ① ~ ③ (생 략)
 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 6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 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(이하 "대행청구단체"라 한다)에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, 소 속 공무원이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・확인하게 할 수 있다.

⑤·⑥ (생 략)

제106조(소액 처리) 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(제47조제4항, 제57조제5항 후단 및 제101조제4항후단에 따라 각각 상계 처리할수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및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아니한다.

제115조(벌칙) ① ~ ③ (생 략)

<u>.</u>
제97조(보고와 검사) ① ~ ③
(현행과 같음)
④ <u>제47조제</u>
<u> 7항에</u>
⑤·⑥ (현행과 같음)
제106조(소액 처리)
제47조제5항
<u>세력1고세0 8</u>
<u>.</u>
제115조(벌칙) ① ~ ③ (현행과
같음)
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(생략)
- 2. <u>제47조제6항을</u> 위반하여 대 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 여금 대행하게 한 자
- 3. 4. (생략)

4
1. (현행과 같음)
2. <u>제47조제7항을</u>
3.•4. (현행과 같음)